

# 부패공직자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제한계획

부패공직자 처벌의 실효성 강화와 효과적인 부패 규제장치 마련을 위하여 「인센티브성과급 운영내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.  
《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(제2014-102호) 등 반영 》

## □ 추진배경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및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
- 부패공직자에 대한 재정상 불이익 부여로 부패행위 예방 효과

## □ 주요 개정내용

- 개정사유 : 『인센티브성과급 운영내규』
- 부패위험성 평가 실시
  - ▷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·환수조치 만으로는 부패통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 있음
  - ▷ 부패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롭고 보다 효과적인 내부통제 필요
- 부패공직자(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·유용)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제한
  - ▷ 파면·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제외
  - ▷ 강등·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액의 50% 감액 지급
  - ▷ 감봉·견책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액의 20% 감액 지급